
응모 직위명	비상임이사	응모번호	※ 기재 불요
--------	-------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향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 소						
		출생지 또는 출신지	※ 지원자가 출생지 또는 출신지를 선택하여 기재함 (출신지 예시: 주로 거주한 지역, 출신학교 소재지 등)					
		전 화	[자택]() [직장]()	- -	휴 대 폰		E-m 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업무연관성 높은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 A4용지 4~6매 정도)

직무수행계획서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사업 계획,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이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관리, 보유기간, 유의사항 등

-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하가 지원한 임원 직위에의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해당 선임기간(원서제출일~인사발령일)까지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됩니다.
- ☞ 인사검증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집·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으로의 임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공공기관 임원 인사담당기관장 귀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	(자필서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예 ☐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	☐ 예 ☐ 아니오
3. 민감정보(범죄경력 등) 처리 동의	☐ 예 ☐ 아니오
4. 개인정보의 제3자(개인정보 보유 기관) 제공 동의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 병적자료 병무청	· 재산등록자료 인사혁신처 등 각 관할기관
· 범죄경력 등 자료 경찰청, 검찰청, 국가기록원	·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舊호적 행정안전부, 지자체, 법원	·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국민연금공단
·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감사원, 각 관할기관	· 출입국 및 국적자료 법무부
· 부동산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	· 정치자금기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 쌀소득직불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각종 인·허가 자료 해당 인·허가 관청

비상임이사 결격사유 등 확인서

※ 본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자필로 기재

□ 임원공모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현 소속	직위

□ 이해관계 자기점검표

구분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이해관계 여부 점검 항목	해당여부
1번	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현직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예 ☐ 아니오
2번	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 예 ☐ 아니오
3번	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이다.	☐ 예 ☐ 아니오
4번	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다.	☐ 예 ☐ 아니오
비고	1~4번에 “ ☒ 예”로 표시한 경우 세부내용 기재	

□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련

항 목	해당여부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여 ☐	부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 ☐	부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⑦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 □ 부 □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기의 표기 및 기재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자(지원자) : (서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기타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일체

☐ 지원서 기재 증빙자료(순서대로)

- 학사 이상 학력 증명서
- 자격 및 면허 사본
- 경력증명서
- 관련분야 논문 표지
- 연구 및 과제수행 표지
- 포상 사본

☐ 기타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